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 5.

특 허 청

산업재산인력과

1. 개정이유

변호사 자격자 등에게 제외되었던 ‘실무수습’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자의 변리사 자격요건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원의 직무윤리 검증 절차 마련과 신속한 인허가 행정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사전 경력의 일부 인정을 규정(안 제12조)
실무수습을 ‘이론교육(400시간 이상)’과 ‘현장연수(10개월 이상)’로 구분하고, 실무수습 기관 및 실무수습의 일부 인정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특허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시,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 정관변경 인가 신청시 특허청장이 인허가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되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을 신설함

다. 위원회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를 작성하는 규정 신설(안 제18조의4)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신설함

라. 업무의 위탁 규정 정비(안 제24조)

변리사법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 영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분산 규정된 위탁
업무를 이 영으로 통합하여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3조에 따른 실무수습은 이론교육과 현장연수로 구분한다.
- ② 이론교육은 400시간 이상으로 하고, 현장연수는 10월 이상으로 한다.
- ③ 이론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론교육 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법 제9조에 따른 변리사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한 기관
- ④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현장연수 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3. 특허청장이 정하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⑤ 실무수습 대상자가 사전에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에 상당하는 실무수습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실무수습의 일부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실무수습의 일부 인정 등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5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5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5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를 “특허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른 등록 업무
6.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의 거부
7.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8. 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
9.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0.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
11. 법 제6조의3제2항, 영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접수

12.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제2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리사 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p> <p>② 실무수습의 내용과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2조(실무수습) ① 법 제3조에 따른 실무수습은 이론교육과 현장연수로 구분한다.</p> <p>② 이론교육은 400시간 이상으로 하고, 현장연수는 10월 이상으로 한다.</p> <p>③ 이론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론교육 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법 제9조에 따른 변리사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한 기관 <p>④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현장연수 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3. 특허청장이 정하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신 설>

<신 설>

제14조(특허법인의 설립인가) ①
~ ③ (생략)

<신 설>

제15조(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⑤ 실무수습 대상자가 사전에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에 상당하는 실무수습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실무수습의 일부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실무수습의 일부 인정 등 그 밖에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허법인의 설립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5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

가 신청) ①·② (생략)

<신설>

제16조의2(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① ~ ③ (생략)

<신설>

가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5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5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신 설>

제24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
여 5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4(위촉위원 직무윤리 사
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
며, 특허청장은 사전진단 결과
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
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
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
은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10조
에 따른 등록 업무

6.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의
거부

7.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u><신 설></u>	8. <u>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u>
<u><신 설></u>	9. <u>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u>
<u><신 설></u>	10. <u>영 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u>
<u><신 설></u>	11. <u>법 제6조의3제2항, 영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접수</u>
<u><신 설></u>	12. <u>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u>
<u><신 설></u>	② <u>특허청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u>
<u><신 설></u>	③ <u>제1항 및 제2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 2.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직위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연 락 처	(042) 481 - 5187